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757
----------	-----

2017. 12. 22(금)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7년 12월 5일

다. 회부일자 : 2017년 12월 6일

라. 상정일자 : 2017년 12월 14일, 2017년 12월 22일

-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보류
-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오진섭 행정국장)

가. 제안사유

- 새 정부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국민안전 강화' 등 현장행정 중심의 인력보강과 도정현안 반영 등을 위해 기구 및 분장사무 조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기구 조정>

- 명칭변경(안 제4장제3절,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 축산위생연구소 → 동물위생시험소

<분장사무 조정>

- 기획관리실 소관사무 조정 및 이관(안 제6조)
 - (조정)행정의 창의·실용 등에 관한 사항 → 열린 혁신에 관한 사항
 - (이관)청년, 저출산, 고령화 관련 업무 : 행정국 → 기획관리실
- 행정국 소관사무 신설(안 제7조)
 - (신설)지역공동체 사업 총괄·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 행정국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호)

- 위 개정조례안은 새 정부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국민안전 강화’ 등 현장행정 중심의 인력보강과 도정현안 반영 등을 위해 기구 및 분장사무 조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행정국 소관 청년지원과의 업무를 기획관리실로 이관을 하고, 행정국에 지역공동체 사업을 총괄할 부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
- 지역공동체 사업이라 함은 주로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시민소통 등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업무를 말하며 타 시도의 경우 대부분 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충청북도가 그동안 마을공동체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무부서가 없이 여러 부서에서 사업을 각각 수행하여 사업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음. 따라서 지역공동체 사업을 담당할 주무부서 신설로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리라 예상이 되어 위 개정조례안에 특별한 이견은 없음. 다만, 앞으로 신설되는 부서가 담당하게 될 지역공동체 사업의 범위, 팀 구성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57호
의결 연월일	2017년 월 일 (제360회)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제출연월일	2017년 12월 05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57
----------	-----

제출연월일 : 2017년 12월 05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새 정부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국민안전 강화’ 등 현장행정 중심의 인력보강과 도정현안 반영 등을 위해 기구 및 분장사무 조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구 조정>

- 명칭변경(안 제4장제3절,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 축산위생연구소 → 동물위생시험소

<분장사무 조정>

- 기획관리실 소관사무 조정 및 이관(안 제6조)
 - (조정)행정의 창의·실용 등에 관한 사항 → 열린 혁신에 관한 사항
 - (이관) 청년, 저출산, 고령화 관련 업무 : 행정국 → 기획관리실
- 행정국 소관사무 신설(안 제7조)
 - (신설) 지역공동체 사업 총괄·기획·조정 에 관한 사항 : 행정국

3. 의안전문 : 불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불 임

5. 관계법령 발췌 : 불 임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7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결혼 및 고령화·저출산 대책 수립 등 인구정책 총괄

제6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3호로 하고,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청년대책 및 청년일자리, 청년복지 정책 추진 총괄

9. 열린 혁신에 관한 사항

10. 주요 국정·도정 시책 평가 및 도지사 공약사업 관리

제7조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8호를 삭제한다.

17. 지역공동체 사업 총괄·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제4장제3절의 제목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를 “충청북도동물위생시험소”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이하 “축산위생연구소”라 한다)”를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이하 “동물위생시험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축산위생연구소”를 “동물위생시험소”로 한다.

제41조 중 “축산위생연구소”를 “동물위생시험소”로 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축산위생연구소”를 “동물위생시험소”로 한다.

제43조 중 “축산위생연구소”를 “동물위생시험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농정분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농 정 분 과	농정국 (농업정책과)	농정국, 농업기술원, 산림환경연구소, 동물위생시험소, 농산사업소, 내수면산업연구소
------------------	----------------	--------------------------------------------------

②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를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이하 “시험소”라 한다)”로 하고, “연구소장”을 “시험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중 “축산위생연구소”를 각각 “동물위생시험소”로 한다.

③ 충청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축산위생연구소”를 “동물위생시험소”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축산위생연구소”를 “동물위생시험소”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기획관리실) (생략)</p> <p>1. ~ 4. (생략)</p> <p><u><신설></u></p> <p>5. 도 예산편성 관리 및 시·군 재정 지도</p> <p>6. 주요사업 투자심사 및 도·시군의 지방 공기업 육성 지도</p> <p><u><신설></u></p> <p><u><신설></u></p> <p><u><신설></u></p> <p>9. 도정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p> <p>10. 조례·규칙의 심사·공포, 소송사건 및 법규의 편찬에 관한 사항</p> <p>11. 각종 통계조사·분석 및 자료 관리</p>	<p>제6조(기획관리실) (현행과 같음)</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결혼 및 고령화·저출산 대책 등 인구정책 총괄</u></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p>7. (현행 제6호와 같음)</p> <p>8. <u>청년대책 및 청년일자리, 청년복지 정책 총괄</u></p> <p>9. <u>열린 혁신에 관한 사항</u></p> <p>10. <u>주요 국정·도정 시책 평가 및 도지사 공약사업 관리</u></p> <p>11. (현행 제9호와 같음)</p> <p>12. (현행 제10호와 같음)</p> <p>13. (현행 제11호와 같음)</p>
<p>제7조(행정국) (생략)</p> <p>1. ~ 16. (생략)</p> <p>17. <u>청년대책 및 청년일자리 정책 추진 총괄</u></p> <p>18. <u>청년복지, 결혼 및 고령화·저출산 대책 수립·지원</u></p>	<p>제7조(행정국) (현행과 같음)</p> <p>1. ~ 16. (현행과 같음)</p> <p>17. <u>지역공동체 사업 총괄·기획·조정</u>에 관한 사항</p> <p><u><삭제></u></p>

현행	개정안
<p>제3절 <u>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u></p> <p>제40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축산물의 검사와 분석, 가축질병의 방역과 검정, 가축개량 및 보급 관련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u>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이하 "축산위생연구소"라 한다)</u>를 설치한다.</p> <p>② <u>축산위생연구소</u>는 충청북도 청주시 관내에 둔다.</p>	<p>제3절 <u>충청북도동물위생시험소</u></p> <p>제40조(설치) ① ----- ----- ----- -----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이하 "<u>동물위생시험소</u>"라 한다)----- -----.</p> <p>② <u>동물위생시험소</u>----- -----.</p>
<p>제41조(소장) <u>축산위생연구소</u>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제41조(소장) <u>동물위생시험소</u>----- ----- ----- -----.</p>
<p>제42조(소관사무) <u>축산위생연구소장</u>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p>1. ~ 10. (생략)</p>	<p>제42조(소관사무) <u>동물위생시험소</u>----- -----.</p> <p>1. ~ 10. (현행과같음)</p>
<p>제43조(지소) <u>축산위생연구소</u>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43조(지소) <u>동물위생시험소</u>----- ----- ----- -----.</p>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시·도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도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실·국·본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국·본부의 개편, 명칭변경과 사무분장을 할 때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